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4535호, 2017.7.18.시행)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규제개선 반영으로 상위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안 제23조제5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 (안 제25조의3)
-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인 연면적 합계 구간과 비율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사무소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견인코자 함(별표 2)

4.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3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도시건축과 건축팀,
전화: 740-3392 Fax: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접수되어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제24조제1항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신고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대가기준의 40%	대가기준의 50%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대가기준의 60%	대가기준의 75%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대가기준의 80%	대가기준의 10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대가기준의 120%	대가기준의 15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대가기준의 160%	대가기준의 200%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대가기준의 200%	대가기준의 250%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대가기준의 240%	대가기준의 300%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④ (생략)</p> <p>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유 발생 일로부터 1년간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u></p> <p>1. <u>법 25조의2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u></p> <p>2. <u>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u></p> <p>3. <u>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u></p> <p>⑥ (생략)</p> <p><u><신설></u></p>	<p>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⑤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25조의3(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u>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u></p>

0호에 따라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별표 2]

연면적 합계	허가·신고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2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8%	대가기준의 10%	대가기준의 12%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	대가기준의 25%	대가기준의 50%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대가기준의 50%	대가기준의 10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40%	대가기준의 75%	대가기준의 15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대가기준의 100%	대가기준의 200%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80%	대가기준의 125%	대가기준의 250%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00%	대가기준의 150%	대가기준의 300%

[별표 2]

연면적 합계	허가·신고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 (주거용은 660제곱 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	대가기준의 40%	대가기준의 50%
495제곱미터 (주거용은 660제곱 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	대가기준의 60%	대가기준의 75%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대가기준의 80%	대가기준의 100%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대가기준의 120%	대가기준의 150%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대가기준의 160%	대가기준의 200%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대가기준의 200%	대가기준의 250%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대가기준의 240%	대가기준의 300%

< 관 계 법 령 >

①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용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